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-45호

도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(2006. 4.13)호로 교남동 62-1번지 일원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뉴타운 지역간의 식별성 및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,
2.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12호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1호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뉴타운사업추진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06년 10월 9일

종 로 구 청 장

- 가. 위 치 : 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원
- 나. 변경사항 :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(정비구역 명칭의 변경)
- 당 초 : 교남 도시환경정비구역
 - 변 경 :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
- 다. 변경사유 : 뉴타운 지역간의 식별성 및 지역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함.
- 라. 법적근거 :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

마. 고시방법 : 시보 및 구동게시판, 종로구홈페이지.
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뉴타운사업추진단(☎ 731-141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